



K리그 정관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 정관

2008년 12월 16일 제정
2009년 6월 30일 개정
2009년 12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2011년 1월 14일 개정
2011년 1월 27일 개정
2011년 2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2013년 1월 15일 개정
2014년 1월 20일 개정
2014년 3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2017년 1월 16일 개정
2017년 1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전 문

본 정관은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의 정관에 따라 대한축구협회 회원단체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영문표기는 Korea Professional Football League, 약칭 K League, 이하 '연맹')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프로팀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으로서, 한국프로축구의 수준향상과 저변확대는 물론 국제교류 등 축구를 통해 국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도모하고, 스포츠 활성화와 지역사회를 비롯한 국가 발전 및 국제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속]

① 연맹은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 라 함)의 회원단체로서 협회, 아시아 축구연맹(이하 'AFC'라 함), 국제축구연맹(이하 'FIFA'라 함)의 정관, 규정, 지침 및 결정을 준수한다.

② 협회 정관에 명시된 연맹 운영에 관한 사안은 협회 정관에 따라 보고 또는 승인하는 절차를 준수한다.

제4조 [소재지]

연맹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위치하며, 필요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성별, 인종, 종교,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사회적 신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

제6조 [윤리강령 및 축구인 헌장]

연맹, 회원 및 그 소속 모든 선수, 코칭스태프, 임직원 등은 협회의 축구인 헌장 및 FIFA 윤리강령을 준수한다.

제7조 [사업]

연맹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프로축구 대회 주최 및 운영에 관련된 사업
2. 프로축구 저변 확대 및 홍보와 관련한 사업
3. 선수, 지도자, 심판 등 인적자원 개발
4. 프로축구와 관련한 제반 행정과 지원업무
5. 프로축구에 관한 국제적인 교류와 그와 관련된 사업
6. 프로축구에 관한 제반 규정의 제정
7. 연맹의 회원 및 개인에 대한 지도, 감독
8. 유소년 축구 육성 및 활성화 사업
9.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수익사업

제8조 [이익의 제공]

연맹은 제7조에서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9조 [사업의 위임]

연맹은 자체 사업을 위임할 수 있으나, 협회로부터 위임받은 사업을 재위임할 때는 협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회원

제10조 [회원의 정의]

회원이라 함은 연맹 이사회, 총회의 회원가입 승인을 받고 협회에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11조 [회원의 가입 및 등록]

연맹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경우, '클럽' 규정에 의거하여 신청하고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협회에 등록 신청한다.

제12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아래의 각 호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1. 제7조에서 정한 사업에 참여할 권리
2.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의 행사할 권리
3. 연맹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을 제기할 권리
4. 연맹의 정관과 규정이 정하는 권리

제13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연맹에 대하여 아래의 각 호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1. 경기규칙을 포함하여 연맹, 협회, AFC, FIFA의 정관, 제반규정, 지시사항 및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제7조에서 정한 사업에 참가할 의무
3. 국내외 공식대회 개최 또는 참가 시 연맹의 승인을 득할 의무
4. 사업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예결산 등 연맹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
5. 주주 및 임원 등 주요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연맹에 보고할 의무
6. 각종 회비 및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
7. 축구관련 분쟁 시 연맹, 협회, AFC, FIFA가 정하는 규정을 준수할 의무

② 회원단체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맹은 제12조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 [회원의 자격상실]

① 회원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될 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이 상실된다.

1. 탈퇴할 때
2. 해산 또는 파산할 때 또는 법원으로부터 이에 관한 선고를 받았을 때

3. 제명되었을 때
- ②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친다.
 1. 탈퇴 희망일로부터 1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회원의 탈퇴는 이사회 심의와 총회의 결정 후 협회 이사회의 확정절차를 거치며, 만일 총회에서 탈퇴에 따른 이행의무를 부과할 경우,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3. 리그 도중에는 탈퇴할 수 없으며, 상기 2호의 절차나 결정과 관계없이 탈퇴할 경우, 상벌규정에 따라 제재를 부과한다.
- ③ 회원이 연맹의 명예를 손상 또는 연맹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소명 절차를 거쳐 제명될 수 있다. 회원의 제명은 총회의결 후 협회의 승인을 받는다.
- ④ 회원의 자격이 상실될 경우, 회원이 납부한 금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15조 [회원의 상벌]

- ① 연맹은 축구발전에 공적이 있는 회원 및 관계자(임직원, 지도자, 선수 등 회원에 소속되거나 관계된 자)를 포상할 수 있으며, 정관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 ② 상기 1항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③ 협회의 징계요청이 있을 경우, 자체 심의 조사하고, 징계대상에 해당할 경우 징계한다.

제16조 [회원의 관리]

연맹은 회원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제3장 기구

제17조 [기구 조직의 구성]

- ① 연맹은 효율적인 운영과 목적사업을 위해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분과위원회
 4. 사무국
- ② 조직 및 기구의 목적과 기능은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다.

제18조 [구성원 등]

연맹은 제17조의 각 기구를 구성하기 위하여 대의원, 임원 및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4장 임원

제19조 [임원의 구분과 인원수 등]

연맹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선임 임원

가. 총 재 : 1인

나. 부 총 재 : **약간명 (수석부총재 1인 지정)**

다. 사무총장 : 1인

라. 이 사 : 13인 이내 (총재, 수석부총재, 사무총장 포함)

마. 감 사 : 2인 이내 (감사 1인은 회계전문가로 함)

2. 위촉 임원

가. 명예총재 : 1인

나. 고 문 : 약간인

다. 위 원 장 : 약간인

라. 기 타

제20조 [임원의 임기]

① 총재, 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 부총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총재를 제외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2회(연속적일 필요 없으며, 1년을 초과하여 총재직을 수행한 경우, 1회로 산정한다.)의 임기를 초과하여 총재직을 수행할 수 없다. 단, 연맹과 관련된 국제기구 임원에 선출되기 위한 경우, 선출된 임원직 수행에 총재직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 및 연맹의 재정에 기여한 경우에 한하여 협회 임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3회 임기 이상 총재직을 수행할 수 있다.

③ 각 회원의 대표 중에서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상기 1항, 3항에서 정하지 않은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이 임원의 결원이 발생할 시에는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해의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단, 선출된 해에는 월수에 관계없이 1년으로 본다.

⑥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하

여야 한다.

제21조 [총재의 선출]

- ① 총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총재 후보자는 학식과 덕망,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연맹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 ③ 연맹은 총재 선출을 위한 총회 개최일 21일전부터 7일간 후보등록 및 선거 관련 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
- ④ 총재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총회 개최 20일전부터 14일전까지 연맹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1. 총재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연맹 제공 양식)
 2. 총재 후보자 이력서 1부
 3. 기타 연맹이 요구하는 서류
- ⑤ 상기 제4항에도 불구하고, 현 총재가 연임을 위해 입후보하고자 할 경우, 제4항 제1호의 서류 제출만으로 입후보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 ⑥ 연맹은 총재 선거와 관련하여 필요사 입후보자의 기탁금 납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한다.** 이 경우 기탁금은 2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로 **으로** 하며, **이사회가 결정한다. 이사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후보자가 1차 투표에서 20% **투표자의 2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연맹은 후보자에게 30일 이내에 기탁금을 반환하며, 반환되지 않은 기탁금은 연맹으로 귀속된다.
- ⑦ 연맹 사무국은 총회 개최 10 **13**일전부터 개최일까지 후보자의 등록 상황을 공고한다.
- ⑧ 총재 선거는 총회에서 아래 각호에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1.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득표자를 총재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 찬반투표를 실시하며,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
 3. ~~2인 이상 입후보사~~ **입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여 당선인을 결정하며, 1차 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상위 득표자 2인(상위 득표자에 동수 득표자가 있을 경우, 연장자 순으로 득표순위를 결정)에 대하여 결선 2차** 투표를 하여 다수 **과반수** 득표자를 총재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결선투표 결과 동수 득표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⑨ 총재가 사임하거나 궐위되었을 경우,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면 본 정관 제24조 제2항에 따라 직무 대행자를 정하고,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이면 사임 또는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 총회를 개최하여 총재를 선출한다.

- ⑩ 연맹은 총재 선거의 행정지원을 위해 선거관리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 ⑪ 기타 본조에 포함되지 아니한 총재 선거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⑫ 총재 입후보 공고 결과,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협회의 승인을 득한 후 추대의 형식으로 총재를 선출할 수 있다.

제22조 [부총재, 사무총장, 이사, 감사의 선출 등]

- ① 부총재, 사무총장, 이사는 총재가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총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그 선임결과가 보고되어야 한다.
- ② 선출 이사의 구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1. 각 회원의 대표(단장급 이상)중 6인
 - 2. 협회 이사 중 협회가 추천한 1인
 - 3. 상기 1, 2호에서 정하지 않은 총재가 추천한 약간명
- ③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선수, 지도자, 심판 출신자가 재적 임원수의 20% 이상 포함
 - 2. 공모 등을 통한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임원수의 20%이상 포함
 - 3. 여성 임원이 재적 임원수의 30%이상 포함
 - 4. 생활체육관계자(선수 출신은 제외)가 회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시 재적 임원수의 20%이상 포함
- ④ 총재를 제외한 선임임원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총재가 추천하는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한 후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 ⑤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1인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회계 전문가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은 감사에 선임될 수 없다.
- ⑥ 이사와 감사는 겸임할 수 없다.
- ⑦ 선임 임원은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를 선임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⑧ 임원의 결격사유 여부는 협회가 확인하며, 그 결과 결격사유 발견시 재선임한다.
- ⑨ 원칙적으로 이사는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단, 총회에서 이를 허용할 경우, 예외로 한다.

제23조 [위촉 임원의 선임]

- ① 위촉임원은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위촉한다.

1. 명예총재는 프로축구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전임 총재 중 총회에서 추대한다.
 2. 고문, 위원장 등 기타 위촉임원은 총재가 이사회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3. 위촉임원의 자격 및 책무, 보수 등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위촉 임원은 위촉승낙서 및 이력서를 위촉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촉 임원은 필요시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할 수는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않는다.

제24조 [임원의 직무]

- ① 총재는 연맹을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고, 총재 유고시에는 총재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사무총장은 총재를 보좌하고 총재가 부여하거나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④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 정관에서 정하는 책무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한다.
- ⑤ 고문은 연맹 업무에 대한 자문 역할 또는 총재가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⑥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5조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연맹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위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비위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협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연맹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재에게 보고하고,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 [임원의 보수]

모든 임원에게는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보수규정에 의거 보수, 퇴직금,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임원의 선임제한]

- ①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이사의 수는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28조 [임원의 결격사유]

-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연맹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이와 유사한 죄의 경우도 포함한다)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벌금 300만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8.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연맹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단,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연맹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9.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연맹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이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
 10.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연맹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11. 국회의원

- ④ 협회의 주무관청 산하 체육단체 및 그 회원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연맹 임원이 될 수 없다.
- ⑤ 연맹 임원이 제1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 ⑥ 연맹은 선임 및 위촉되는 임원에 대하여 범죄경력사실조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임원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임원은 연맹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 ⑧ 임원은 연맹 운영과 관련 없는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 ⑨ 타 체육관련단체의 소속원으로서 위 4, 5항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경우 연맹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 ⑩ 연맹 임원이 연맹 운영과 관련된 비위 사유로 협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그 직무는 정지된다.
- ⑪ 연맹과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연맹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연맹은 해당자로부터 연맹과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연맹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익이 제기되면 협회에 조사를 신청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⑫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법인 또는 기타단체 등은 연맹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29조 [선임 임원의 해임]

-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임원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으며,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연맹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연맹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4. 심신상의 이유로 직무의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5. 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임원으로서 부적격한 행위가 있었을 때

- ② 선임 임원의 해임은 제25조 3호의 감사결과 비위, 부정이 있는 사유가 아닌 한, 그 임원이 선임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 ③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 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으며, 해임 건의가 의결된 당사자는 총회 의결 시까지 그 권한이 정지된다.
- ④ 상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임원을 해임하려고 할 때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⑤ 해임안은 비밀투표 방식에 의하여 의결되어야 한다.
- ⑥ 해임이 의결되면,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제30조 [임원의 사고 또는 궤위 시 조치]

- ① 총재가 사임, 해임 등의 사유 또는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총재가 직무를 대행하고, 부총재의 직무 대행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불가능할 경우, 총회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한다.
- ② 총재를 제외한 선임임원의 사고 또는 궤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회를 개최하여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 ③ 위촉임원의 사고 또는 궤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를 개최하여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 ④ 직무대행자는 조속한 시일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제5장 대의원 총회

제31조 [총회의 정의 및 구성]

- ① 대의원(또는 회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는 연맹의 최고 의결 기관이다.
- ② 총회는 다음의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1. 각 회원의 구단주 (또는 회원이 선임하는 자)
 2. 협회가 추천하는 2인

제32조 [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가입, 변경, 탈퇴, 제명 등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 해임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연맹 재산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연맹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사항

제33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총재가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총재는 정기총회 15일 이전에 총회소집을 통보하여야 하고, 총회 소집일 7일 이전에 목적사항을 명기하여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④ 정기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 이외의 사항이라 할지라도 이를 상정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4조 [임시 총회의 소집]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권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대의원 과반수가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25조 4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본 제34조에 의해 임시총회의 소집이 요구된 경우, 총재는 15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 ③ 총회 소집권자가 사임, 궐위되거나 또는 총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2주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할 경우 협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임시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 이외의 사항이라 할지라도 이를 상정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5조 [의장]

- ① 총재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출석 대의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 ② 의장 본인이 의결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대의원 중에서 임시 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 ③ 총재가 의장이 될 경우에는 표결권 및 가·부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임시의장이 선출된 경우에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은 가지나 가·부동수일 때에 결정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36조 [총회의 의결방법]

-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된다.
- ② 총회의 표결은 본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 ② 대의원은 1인 1의결권을 갖는다.

제37조 [총회의결권 제외 사유]

총재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총재 또는 대의원 자신과 연맹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8조 [임원의 발언권]

- ① 임원은 필요시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의에 응답할 수 있다.
- ② 임원은 총회에서 행한 정당한 직무상 진술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39조 [총회의 의사록 및 의사 규정]

-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대의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단, 의사록은 녹취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전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총회의 의사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회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이사회

제40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연맹의 최고 집행기구로서 제19조 제1호 라에 해당하는 이사로 구성한다.

제41조 [이사회 권한]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 및 결산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과 예산의 변경, 추경예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제 규정, 세칙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
5. 정관, 규정에서 이사회에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6. 기타 총재가 이사회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2조 [이사회 소집]

- ① 이사회는 년 4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총재가 소집한다.
- ② 총재는 이사회 소집일 7일 이전에 목적사항을 명기하여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43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총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사임,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협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44조 [이사회 의결방법]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② 이사회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 ④ 위임장에 의한 대리출석 또는 의결권의 위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⑤ 당해 사안에 대하여 이해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이사는 의결에서 제외된다.
- ⑥ 이사회 결정은 별도의 결정이 없는 한 즉각 효력을 발생한다.

제45조 [긴급처리]

- ①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총재가 처리,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서 추인 받아야 한다.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이사회 의결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결의로 이사회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상기 1항과 관련하여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6조 [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이사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단, 의사록은 녹취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전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은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 [분과위원회]

① 연맹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명칭 및 주요 기능, 운영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 필요할 경우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임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은 분과위원회에 준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필요시),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촉임원으로 제16조 6항에 의거 총재가 이사회 동의를 거쳐 선임하며, 위원은 당해 분야의 전문가로 총재가 위촉하며,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위촉한다.

제7장 협회와의 관계

제48조 [권리]

연맹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협회 대의원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및 의결할 권리
2. 협회에 건의 및 소청할 권리
3. 협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권리
4. 협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 및 후원할 권리

제49조 [의무]

연맹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협회 정관과 제반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연맹 정관의 제,개정시 협회 승인을 받을 의무
3. 연맹 이사회 종료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협회에 보고할 의무

4. 선임 임원 변동시 협회에 보고할 의무
5. 직무관련 비리 혐의자에 대한 협회의 징계요청이 있을시 자체 심의·조사 하고, 징계대상에 해당할 경우 징계 후 보고할 의무
6. 협회의 국가대표축구단 운영규정에 따른 선수 소집 일정을 준수할 의무
7. 국내, 국제대회를 개최하거나 참가할 경우 협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보고할 의무

제8장 재산과 회계

제50조 [수익사업]

연맹은 제7조에 규정한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1조 [재산의 구분]

- ① 연맹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아래와 같다.
 1. 법인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별지목록에 기재된 재산
 2. 기본재산으로 지정되어 기부 및 출연된 재산과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을 말한다.

제52조 [재정]

연맹의 재정은 아래의 각호의 수입으로 운영된다.

1. 사업 수입금
2. 회원 납부금
3. 재산운영에 따른 수익금
4. 기부금 및 찬조금
5. 기타 수입금

제53조 [회계]

-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 ② 사업계획 및 예산은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거쳐 이사회 심의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결산보고서 상에 기재되는 재산, 재정, 회계 등의 사항의 주요한 변화에 대해

서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제54조 [경비의 조달 방법 등]

연맹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보조금, 기부금, 후원금,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55조 [기금의 운영]

각종 기금별로 계정을 따로 정하고 회계연도결산서에 기금 적립 실적을 명기하여야한다. 이사회의 의결로 기금운영규정을 따로 정한다.

제9장 사무국

제56조 [업무]

사무국은 연맹의 운영 및 행정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제57조 [기능]

사무국은 경기, 교육, 국제, 기술, 기획, 사업, 심판, 총무, 홍보, 재무 등의 제반 행정기능을 수행한다.

제58조 [조직]

- ① 사무국은 사무총장이 관장하고,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부서를 둔다.
- ② 사무국의 장은 총재가 임명하고, 세부직제, 관장 행정업무 및 직원의 인사관리 등에 대한 세칙은 이사회가 인준하는 별도의 내부 규정에 의한다.

제59조 [직원의 신분 보장]

사무국 직원은 법령 및 이사회에서 정한 인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10장 분쟁의 해결

제60조 [분쟁해결]

- ① 회원과 그 소속 선수와 임직원이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연맹의 정관과 규정에 따른 분쟁조정절차에 의한다.
- ② 각종 분쟁사항은 연맹을 통해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분쟁에 대한 연맹의 결

정사항을 존중한다.

③ 분쟁당사자는 연맹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협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장 보칙

제61조 [정관의 변경]

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과 협회의 승인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2조 [연맹의 해산]

① 연맹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거쳐 총회의 재적 인원 3분의 2이상의 의결 후 협회의 승인을 받는다. 해산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② 연맹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협회 또는 연맹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하기로 한다.

제63조 [규정의 제정]

이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정관에 없는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2장 부칙

제1조 [정관의 효력]

이 정관은 협회 승인을 득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설립자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정관 시행 당시의 연맹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고, 그 임기 또한 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